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 상 북 도 교 육 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85

제출연월일 : 2023. 2. 23.

제 출 자 : 경상북도교육감

1. 제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취득 재산: 376,943,404천 원

- 토 지: 8,148㎡ 5,022,447천 원
- 건 물: 109,908.8㎡ 371,920,957천 원

□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2건)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영천도서관 건립 6,642㎡ 2,470,174천 원
- (가칭)압량유치원 신설(기부채납) 1,506㎡ 2,552,273천 원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12건)

- 그린스마트스쿨 취득(22교)	79,933.29㎡	252,590,402천 원
-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	7,100㎡	33,898,017천 원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영천도서관 건립	2,700㎡	14,502,140천 원
- (가칭)상주형미래교육지원센터 증개축	2,200㎡	8,695,214천 원
- (가칭)울릉미래교육센터 건립	2,030㎡	12,127,359천 원
-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설	9,894.07㎡	30,879,639천 원
- 구미신당초등학교 교실(모듈러교실) 증축	1,403㎡	3,495,578천 원
- (가칭)압량유치원 신설(기부채납)	2,051.04㎡	4,333,983천 원
- 영천여자고등학교 탁구전용 체육관 취득	804㎡	2,816,723천 원
- 대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709.2㎡	3,799,089천 원
- 의성여자고등학교 특별교실 및 급식소 취득	448.8㎡	2,308,632천 원
- 창수초등학교 특별교실 및 급식소 취득	635.4㎡	2,474,181천 원

나. 취득 변경: 57,868,167천 원

❑ 그린스마트스쿨 취득 변경(3교)

(안동송현초등학교)

- 변경 전	<면적>	<금액>
▪ 건물 (3층)	4,425㎡	11,947,500천 원
- 변경 후	<면적>	<금액>
▪ 건물 (5층)	10,268.82㎡	26,649,560천 원

(길주중학교)

- 변경 전	<면적>	<금액>
▪ 건물 (3층)	3,530㎡	9,531,000천 원
- 변경 후	<면적>	<금액>
▪ 건물 (3층)	5,147.68㎡	12,444,720천 원

(영양초등학교)

- 변경 전	<면적>	<금액>
▪ 건물 (3층)	3,250㎡	8,775,000천 원
- 변경 후	<면적>	<금액>
▪ 건물 (지하주차장/지상4층)	8,624.04㎡	18,773,887천 원

다. 처분 재산: 1,203,267천 원

- 토　지: 30,147㎡ 923,940천 원
- 건　물: 1,243.83㎡ 267,420천 원
- 공작물: 4식 9,792천 원
- 입목죽: 262주 2,115천 원

❑ 폐교재산 처분(2건)

- (구)상주초등학교남장분교장 매각 313,046천 원
- (구)상천초등학교 매각 666,552천 원

❑ 실습지 처분(1건)

-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매각 9,941㎡ 223,669천 원

라. 기타(교환)

❑ 선산초등학교 선산학생체육관 부지와 구미고등학교 담장 부지(구미시 소유) 상호 교환

- (교육청)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466외 1필지 4,239㎡ 1,421,336천 원
- (구미시)구미시 도량동 792-136외 1필지 2,527㎡ 1,434,577천 원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하략>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